

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교통안전법」 및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비와 교통안전관련 유관기관·단체들의 주요업무 협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 정책추진을 위한 「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

- 현행 : 「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」
- 개정 : 「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위원회 기능 및 구성원 상세조항 정비(안 제2조, 제3조)

다. 위원장의 직무 등, 위원의 임기, 회의 관련 상세조항 정비 (안 제4조~ 제6조)

라. 전문위원 관련 조항 신설(안 제7조)

마. 위원의 해촉 및 간사와 서기 관련 상세조항 정비(안 제8조, 제9조)

바.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(안 제1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,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없음

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
2.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

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구미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
2. 구미경찰서장 또는 교통과장
3.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
4.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
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
제7조(전문위원)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원할때

2.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,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에 따른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교통안전법」

제13조(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)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"지방교통위원회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②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

제8조(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.

② 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

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

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활동여비 지원 (안 제10조)
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(안 제10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활동여비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.
- 산출내역(안) (단위:천원)

내 용		산출내역	금액
여비	위원회 회의 활동지원	30천원 × 10명 × 4회	1,200
수당	위원회 회의 참석	70천원 × 16명 × 6회	6,720

- 수당 산출근거 ※ 2019년 예산편성지침 기준(위원회 수당)
 - 회의수당 : 인당 70,000원
 - 활동여비 : 회당 30,000원

4. 작성자

- 교통정책과 교통기획계 박명희(054-480-6252)

소관 실·과		교통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주 광 하
	담 당	박 영 희
	담 당 자	박 명 희 (480-6252)